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
람

기관위원장

제990호 2013. 11. 12.(화)

차 례

조 례

-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
조례 ----- 1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3년 11월 12일

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03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3. 12.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 반 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98% 이상	2% 이내

비 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% 이내	7% 이내	23% 이내	34% 이내	30% 이내	5% 이상

비 고 :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 율	7% 이내	30% 이내	40% 이내	13% 이상	10% 이상

비 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 기 구	직속기관	출장소	동
총 계	862	-				
정무직 계	1	-				
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858	-				
3급	1	1				
4급	5	3	1	1		
5급	53	24	2	6	1	20
6급 이하 계	799	-				
별정직 계	3	-				
5급 상당	-					
6급 상당 이하 계	3	-				